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6
----------	----

제출년월일 : 2018. 7.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8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2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 2건 8필지 53,983㎡ 2,000,000천원입니다.

가. 토지 취득 : 2건 8필지 53,983㎡ 2,000,000천원

① 방림 글램핑장 조성 부지 매입(문화관광과)

▷ 방림면 방림리 1618번지의 5필지 41,644㎡ 1,383,000천원

② 방림 체육공원 확충사업 부지 매입(시설관리과)

▷ 방림면 방림리 736-3번지의 1필지 12,339㎡ 617,000천원

3. 첨부자료

- 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부.
- 나. 사업계획서
-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총괄표]

(단위:m²,천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8	100,182	12,198,623	10	209,402	14,198,623	2	53,983	2,000,000
		건물	3	2,419.94	552,312	3	2,419.94	552,312			
		기타									
	매입	토지	8	100,182	12,198,623	10	209,402	14,198,623	2	53,983	2,000,000
		건물	3	2,419.94	552,312	3	2,419.94	552,312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분	합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18년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2차)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취득 (2건, 8필지)			53,983	2,000,000			
소계(1건 6필지)			41,644	1,383,000			
1	대	방림면 방림리 1618	304	27,360	2018 하반기	방림 글램핑장 조성	조규천
2	전	방림면 방림리 1619	5,468	437,440			조규천
3	전	방림면 방림리 1619-2	330	29,700			강효원
4	임	방림면 방림리 산608-1	860	21,500			김병홍
5	임	방림면 방림리 산608-3	3,570	89,250			고재용
6	임	방림면 방림리 산609-1	31,112	777,750			이정호
소계(1건 2필지)			12,339	617,000			
1	전	방림면 방림리 736-3	9,161	458,100	2018 하반기	방림 체육공원 확충사업	최돈열
2	전	방림면 방림리 736-5	3,178	158,900			장연석

<사업계획 1>

방림 글램핑장 조성 부지매입

- 뇌운계곡을 활용한 특화된 글램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개요

- 기 간 : '18. 8월 ~ 11월
- 위 치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18번지 외 5필지
- 사업규모 : 부지매입 41,644m²
- 사 업 비 : 군비 1,383,000천원

취득대상 재산내역

(단위:m²,천원)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재산가액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6필지		130,010	41,644	167,622	1,383,000	
방림면 방림리	1618	대	304	304	7,630	27,360	조규천
방림면 방림리	1619	전	5,468	5,468	133,419	437,440	조규천
방림면 방림리	1619-2	전	330	330	7,656	29,700	강효원
방림면 방림리	산 608-1	임	860	860	423	21,500	김병홍
방림면 방림리	산 608-3	임	3,570	3,570	1,724	89,250	고재용
방림면 방림리	산 609-1	임	119,478	31,112	16,770	777,750	이정호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8. 8월
-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 2018. 11월까지
- '19년 당초예산 반영요청 : 2018. 11월

□ 연도별 추진계획

○ 투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계	2,883	1,383	750	750	
군 비	2,883	1,383	750	750	

○ 연도별 세부 투자내역

- '18년도 투자계획세부 내역(사업비 산출내역) ----- 1,383백만원
 - 부지매입----- 1,383백만원

- '19년도 투자계획세부 내역(사업비 산출내역) ----- 750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00백만원
 - 부지정지 및 기반시설 등 ----- 650백만원

- '20년도 투자계획세부 내역(사업비 산출내역) ----- 750백만원
 - 글램핑(7m*5m) * 25백만원 * 10동 ----- 250백만원
 - 오토캠핑장(8m*6m) 30사이트 ----- 100백만원
 - 화장실 및 샤워장 3개소 ----- 150백만원
 - 간이 수영장 1개소 ----- 100백만원
 - 관리사무소 ----- 150백만원

□ 위치도 및 지적도



<사업계획 2>

방림 체육공원 확충사업 부지매입

- 2014년 준공된 방림체육공원의 열악한 편의시설 및 부족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다양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방림면 방림리 736-3번지, 736-5번지
- 사업내용 : 확충사업 부지 매입(2필지, 12,339㎡)
- 매 입 비 : 617백만원(군비 100%)

□ 취득대상재산내역

(단위:㎡,원)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재산가액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계	2필지		12,339	12,339	383,742,900	616,950,000	
방림면 방림리	736-3	전	9,161	9,161	284,907,100	458,050,000	최돈열
방림면 방림리	736-5	전	3,178	3,178	98,835,800	158,900,000	장연석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8. 8월
- 부지매입 : 2018. 9월
- 1단계 공사 추진 : 2018. 9월 ~ 12월
 - 사업내용 : 화장실 1동 설치 및 주변 수목 식재
 - 사 업 비 : 100백만원(2018년도 2회 추경 예산 반영)

○ 2단계 공사 추진 : 2019. 1월 ~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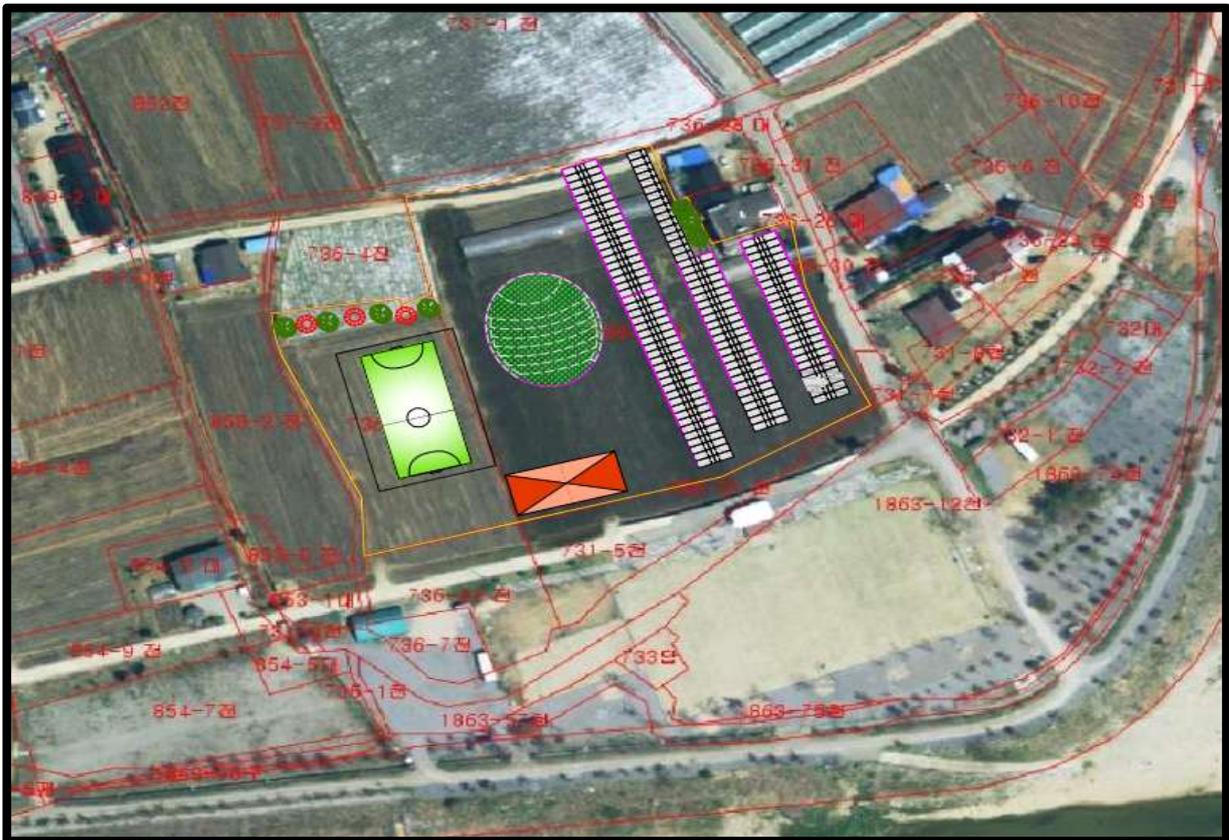
- 사업내용 : 다목적구장(25m×45m)1면 및 주차장 조성, 기타 주변정비

- 사 업 비 : 600백만원(2019년도 당초 예산 반영)

□ 기대효과

○ 방림체육공원은 하천부지에 위치하여 영구 시설물 조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부지매입을 통한 영구시설물 확충사업 추진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시설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배치도



□ 위치도 및 지적도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